

동신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6. 03. 01.

1차개정: 2002. 03. 01.

2차개정: 2003. 04. 30.

3차개정: 2006. 03. 28 행정 제1696호

4차개정: 동신초-3409(2011. 04. 08.)

5차개정: 동신초-646 (2012. 02. 06.)

6차개정: 동신초-1176 (2013. 02. 21.)

7차개정: 동신초-1675(2017. 02. 22.)

8차개정: 동신초-9482(2020. 09. 28.)

9차개정: 동신초-1913(2021. 02. 24.)

10차개정: 동신초-13413(2022. 11. 22.)

11차개정: 동신초- (2023. 12. 15)예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동신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명칭)

본교는 『동신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학교소재지)

본교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5(상동 280번지)로 한다.(개정 2003.4.30, 2016.11.)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본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당해 학년을 포함하여 향후 6개년 간 재학할 수 있다.
- ③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본교에 전입학한 학생은 이전 학교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개년 간 재학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매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44조(학기)개정·공포(2004. 2. 17)]

제6조(휴업일 등)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 3월—20일 5월 1일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 학년말 방학

㉤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 토요일휴무일 :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토요일휴무를 실시한다.(신설 2006.3.28.)

- ② 제1항 제㉔㉕㉖의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적절히 조정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휴업일은 제1항 각 호의 휴업일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2월말까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정읍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휴업기간이라도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등교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3.4.30.)
- ⑥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⑦ 학교장은 제6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매 학년도 3월의 학급편성은 공립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과 정읍교육지원청의 학급배정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생 정원)

- ① 학급당 학생 정원은 공립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에서 시단위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어린이의 학적은 정원 외로 관리한다.
 - ㉠ 입학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
 -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 중에 있는 어린이

제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교과·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학년(급)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권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정읍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운영 관련 장학지침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제10조(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제11조(수업운영 방법 등)

- ① 수업시간의 운영에 필요한 일일시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시간은 1시간을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80분 단위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년·학과를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

- ①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화상수업이 가능해지고, 화상수업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 여건이 성숙되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재택수업도 할 수 있게 고려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에 관한 사

항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따른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4주, 단체교환학습은 2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15일로 한다.

제13조(교육평가)

①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지침 및 학교 평가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알려야 한다.

②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교·학년(급)평가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를 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특수교육)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선정(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되면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개인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③ 평가와 관련한 기본사항은 본교 평가계획에 따르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참여 방법이 포함된 평가조정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별로 결정한다.

제16조(학습 더딤 학생 지도)

① 매년 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실정에 맞게 기초학력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기초학력 향상 추진 계획에 의해 학년 초 학습 더딤 학생을 선별하고 학습 더딤의 수준과 원인을 파악한다.

③ 학습 더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교 자체 및 교육지원청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킨다.

제5장 입학·취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취학유예

제17조(입학)

① 입학은 당해 학년도 적령 어린이로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학구의 동장이 통보해 준 취학 통지를 받은 어린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어린이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어린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규정(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에 의거하여 입학하는 어린이로 한다.

② 입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어린이의 학부모 또는 어린이의 거주지 동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본교에 보내준 취학아동 명단에는 빠져 있어도 학령에 해당되는 연령의 어린이로 본교 학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확인되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 학생의 명단이 그 어린이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8조 (미취학 아동의 관리)

① 학교장은 의무 취학대상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어린이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일 이상 결석을 할 때
- ㉡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고용자한테 방해 당하고 있을 때
- ② 취학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입학하지 않거나 입학이후 독촉 또는 경고를 하였어도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어린이의 학적은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 ①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는 질병 등 취학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유예 신청서)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입학이후에 질병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의무 취학 유예를 허가 받은 어린이가 재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어린이나 어린이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재취학·편입학)

- ①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어린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자(자녀 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심의회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전출입)

- ① 본교 이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서류 확인 후 전출한 학교(원적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
- ③ 학생이 전출한 때에는 전출한 학교(원적교)에서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그에 따라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송부한다.
- ④ 기타 전·편입학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22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절차에 갈음한다.(개정 2003.4.30)

제23조 (조기입학의 허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제6장 졸업·수료·조기진급·조기졸업

제24조(수료와 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또는 졸업)는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이 종료되는 날 현재까지 출석부에 등재되어 있는 어린이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년 수료(또는 졸업)를 인정하고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취학 유예(또는 면제) 상태에 있는 어린이와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는 수료에서 제외한다.
- ② 졸업은 6학년을 수료하여 초등학교 전 과정을 마쳤을 경우를 말하며 의무취학 유예(또는 면제) 상태에 있는 어린이는 제외한다.
- ③ 1~5학년 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자 전원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9)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개정 2013.2.19)

제26조의1(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의 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신설 2013.2.19)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6조의 1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6조의 4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1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신설 2013.2.19)
- ②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3.2.19)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26조의4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3.2.19)

② 제26조의4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명예졸업)

① 본교에 3년 이상 재학하였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지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교 6개년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대상자와 같은 시기(전후3년)에 재학했던 동문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명예졸업 추천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인원이 명예졸업 인정에 찬성했을 경우

㉢ 대상자가 다른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최측근 가족)이 이를 원하고 있을 경우(신설 2003.4.30)

제28조(졸업장 수여)

① 학교장은 초등학교의 6개년 전과정을 마친 어린이에게는 졸업장(서식 13)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5조에 의한 조기졸업의 경우에도 졸업장을 수여토록 한다.

③ 명예졸업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졸업임이 졸업장에 표시되어야 한다.(신설 2003.4.30)

제29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활용)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 서식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전산화 자료입력·보관 등)하고,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4.30)

제7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포상)

- ① 학교장은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어린이와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어린이, 그리고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졸업생에 대한 시상 및 장학금은 매 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④ 재학생의 장학금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1조(학교생활교육)

- ① 교육활동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에 대한 차별은 금지한다.
- ② 학생생활에 관련한 ~~제반사항(징계포함)들을 규정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규칙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 자치활동)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다모임 및 학급다모임을 조직·운영한다.
- ② 다모임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5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징수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1장 학칙의 개정

제36조(학칙개정)

- ① 학칙은 교육관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또는 학교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의 개시 직전까지는 개정하여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칙의 개정은 그 내용을 교무회의 (전체 교원만으로 구성함)에 회부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발의한다.
- ③ 발의된 개정안은 관련내용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구 수정 후 최종안으로 확정한다.
- ④ 학칙개정에 관한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제37조(규정 개정 예외)

- ① 교육감(장)으로부터 인가된 긴급하고 중요한 학교규칙 개정 요구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학교 전자문서로 접수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조기입학 심의를 하기 위해 조기 입학 심의위원회를 둔다.
2. 특수교육아동의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해 특수교육개별화 교육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와 진단평가 협의회(이하“특교육위원회”한다)를 둔다.
3. 이 학교의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3.4.30. 관리 제868호)

1. 학교의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2학년도에 규정되지 않은 학적변동 관련한 용어 사용과 어린이들의 출결사항 관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6호 : 2001.3.29)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2006. 3. 28. 행정 제 1969호)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3409(2011. 04. 08)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646(2012. 02. 06)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1167(2013. 02.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1675(2016. 11. 19)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9482(2020. 9. 28)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1913(2021. 2. 24)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13413(2022. 11. 22.)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신초- (2023. 12. 00.)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